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경력경쟁채용 대상자 요건으로서 “민간 분야”를 명시하고,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학제개편사항 반영과 해양·수산 분야 고교 채용요건을 정비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2, 별표3, 별표6)
-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를 「공무원임용령」 수준으로 정비하여,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다. 본청과 지방청 간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해 합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제33조의2)
- 라.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채용비위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제38조의2, 제38조의3)
- 마. 위탁교육훈련·고용휴직·주재관 임용 등의 사유발생 시 유연한 인력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무보직 사유를 신설하고, 직제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50조의2)

바.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현재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 심사:시험 비율을 전(全)계급에서 “심사70:시험30”으로 일원화하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단축을 감안하여 경력 평정 기간조정을 통해 고성과자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 시 근무성적평정의 반영기간을 단축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함(안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72조, 제81조)

사. 중요범죄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시의 특별승진 가능 계급을 경정까지로 확대(안 제87조)

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한국사 대체성적의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응시자 부담을 경감(별표7, 별표7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를 “임용예정직위”로, “근무경력”을 “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학과를”을 “학과 등(‘해양경찰’ 명칭이 인용된 학부·학과·전공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학과”를 “학과 등(‘해양경찰’ 명칭이 인용된 학부·학과·전공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졸업예정자”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졸업일이 해당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종전의 제3호) 중 “실시권”을 “실시”로 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제4장에 제33조의2, 제37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의2(채용시험의 점검) ① 시험실시권자는 최종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채용비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

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

· 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경찰공무원

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
는 경찰공무원

제5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직제상 파견)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
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
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
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본문 중 “60퍼센트(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
우에는 70퍼센트)”를 “70퍼센트”로, “40퍼센트(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총경:”을 “총경·경정·경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라목) 중 “경장:”을 “경위·경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마목) 중 “순경:”을 “경장·순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5년간”을 “4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년 6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바목) 중 “순경:”을 “경장·순경:”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65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4항 중 “경장”을 “경위”로, “경사 이상”을 “경감인”으로 한다.

제87조제4호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한다”를 “하되,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의 경정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세 이상 45세 이하

별표 3의 경감·경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세 이상 45세 이하

별표 6의 경사·경장·순경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별표 6 비고 제3호 및 제4호 중 “항해술 또는 기관술”을 각각 “항해학 또는 기관학”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7의2 비고 중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제3항제3호 및 제16조제3항제5호, 별표2, 별표3, 별표7, 별표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 기간의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u>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나.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임용예정직위</u> ----- ----- ----- ----- <u>근무</u>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

----- 학과
등(‘해양경찰’ 명칭이 인용된 학부·학과·전공 등)
을 -----

나. -----

----- 학과
등(‘해양경찰’ 명칭이 인용된 학부·학과·전공 등)-

4. (현행과 같음)

5. -----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졸업일이 해당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생략)

④ 삭제

⑤ ~ ⑦ (생략)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6.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 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1.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실시권

2.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신 설>

----- 위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삭 제>

2. -----

----- 실시

제33조의2(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의2(채용시험의 점검) ①

시험실시권자는 최종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소명하지 않
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

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

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채용비

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비위심의위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신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

상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경찰공무원

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

령」에 따라 1년 이상 주

재관으로 임용되는 경찰공

무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직제상 파견) ① 제47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

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

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

수 있다.

② 제4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70퍼센트 -----

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생략)

⑤·⑥ (생략)

제57조(경력 평정) ①·② (생략)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정·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다. 경위·경사: 평정기준일

30

퍼센트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57조(경력 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총경·경정·경감: -----

<삭제>

<삭제>

부터 최근 3년간

라. 경장: 평정기준일부터 최
근 2년간

마. 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
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생략)

나. 경정·경감: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 6
개월간

마. 경장: 기본경력 전 1년

바.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
간

④ (생략)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
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
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
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
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 경위·경사: -----

-

다. 경장·순경: -----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4년간

다. ----- 3년간

라. ----- 1년간

<삭 제>

마. 경장·순경: -----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③ ~ ⑦ (생략)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

심사승진후보자 7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30퍼센트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

② (생략)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③ (생략)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

1. ----- 70퍼센트

2. ----- 30퍼센트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위 -----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u>경사</u>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u>경감인</u> ----- ----- ----- ----- -----.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u>경감</u>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 ----- <u>경정</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